

의안
번호

4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2. 1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윤주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416호

다. 제출일자 : 2025. 02. 03.

라. 회부일자 : 2025. 02. 10.

2. 제안이유

- 정의 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 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 다. 민간위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0. 00. ~ 2025. 00. 0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치사무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현재 성북구는 여러 분야에서 148개의 사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58,463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성북구 민간위탁 사무 현황(2024.12. 기준)

- 분야별 현황 : 총 148개 사무
- 총 예산액 : 58,463백만원

계	사회복지	산업,일자리	보건의료	자치행정
148	134	9	4	1

□ 주요내용 검토

(1) 성북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민간위탁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의 정의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으로 한정된 민간위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공사, 지방공단·출자 및 출연기관을 제외대상 범위로 명확히 정의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 략)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

현행	개정안
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u>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u>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u>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이는 성북복지재단 출범에 따라 해당기관을 민간위탁 조례 적용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비하여 민간위탁 제외대상 범위를 폭넓게 정비한 것으로 보임.

(2)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변경(안 제4조의2, 제4조3항 삭제)

- 안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관련 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를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재위탁은 기존대로 의회 동의를 받고, 재계약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 하되, 동일한 사무를 연속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

현행	개정안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u>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u>

- 이는 민간 위탁사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계약은 의회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조치로 보임.
- 또한, 동일 사무를 연속 위탁하는 경우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마련하여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관리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3) 민간위탁에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 안 제4조의3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각 부서별로 제출하는 동의안의 서식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회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 됨.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 및 결과 공개(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업체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토록 하고 선정 결과를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현행	개정안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u>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u>	② -----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신 설>	1. 구의회 의원
<신 설>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 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 설>	5. 관계 공무원
<신 설>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불필요한 공증의무 절차 삭제(안 제10조제1항)

- 안 제10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력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2020.8.31.)’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서 협약서 인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삭제한 것임.

(7) 단순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안 제17조)

- 그 밖에 안 제7조 및 안 제17조는 단순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행정안전부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 등을 반영하는 한편, 수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비율 확대 및 의회 동의 절차 등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